

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 징수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. 3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3. 10

다. 상 정 일 자 : 2001. 3. 10

(제92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부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환경과장 김 재 원

나. 개정사유

- 현재 이해하기 어려운 요금체계를 단일화하여 정상적인 영업유도
- '97년 현행요금 결정후 소비자 불가 및 인건비 상승등으로 인한 인상요인 발생, 수수료 및 사용료 현실화 조치

다. 주요내용

- 요금체계 전면조정 및 인상
 - 분뇨수집·운반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 : l 당 8.2원 → l 당 12원 (별표1)
 - 정화조청소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: l 당 9.2원 → l 당 12원 (별표2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양정열)

-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 하나인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세외수입을 확충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,
- 지난 '97. 3. 26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시행해온 현행 요금체계가 그동안 소비자 불가 및 인건비 상승등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판단, 요금 체계를 단일화 하고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요금을 인상조치키 위한 개정 조례안 임.
- 요금체계를 단일화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체계화함은 매우 바람직 스런 조치라 판단되며,
- 다만, 요금을 인상 현실화 하였다고 하나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사전에 군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와 설명이 선행된 이후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-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절차나 상위법규의 저촉여부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(질의요지)

- 수수료 사용료가 1 당 12원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수기시 수거량을 측정할 수 있는 미터기등이 없어 개략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은?

(답변요지)

- 분뇨등 헐잡불은 미터기 사용이 곤란하나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해 보겠음.

5. 토론요지

“ 생략 ”

6. 심사결과

“ 원안가결 ”

첨 부 : 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 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
이 개정한다.

“별표1”, “별표2”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 현 행 >

【 별표1 서식 】

분뇨수집·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요율표

(단위 : 원)

부 과 대 상	부 과 기 준	수 기 요 금
계		148
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	18ℓ당	126
처리장 사용료	18ℓ당	22

【 별표2 서식 】

정화조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요율표

(단위 : m³, 원)

구 분	용 량	계	청소 수수료	처리장 사용료
기 본	0.75m ³	6,920	6,060	860
초 과	매 0.1m ³	860	740	120